

약관명 : 대출거래약정서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증자리론용)

시행일 : 2024.09.10

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

현행	개정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출거래약정서 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증자리론용)</p> <p>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(거래방식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 내에 “√” 표시 합니다.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우대금리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(생략)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</td> </tr> <tr> <td>미집액</td> <td>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추가우대 (최대 1.0%p 내 적용가능)</td> <td rowspan="2">사회적 배려층 (최대 2개 선택가능)</td> <td>(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그 외</td> <td>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청년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혼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생아출산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건축물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 주택 입주자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 1.0%p ※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</td> </tr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조기(중도)상환수수료</td> <td> 1. (생략) 2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배려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 *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기준 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채권유동화에 관한 특약사항 -</p> <p>제8조 주택보유수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보유한 주택(지분으로 보유한 경우, 복합용도 주택인 경우 주택면적이 1/20이상인 경우,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)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다만, 본건 담보주택 외에 기존 1주택</p>	우대금리	(생략)			미집액	(생략)			추가우대 (최대 1.0%p 내 적용가능)	사회적 배려층 (최대 2개 선택가능)	(생략)		그 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청년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혼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생아출산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건축물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 주택 입주자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 1.0%p ※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	조기(중도)상환수수료	1. (생략) 2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배려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 *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기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출거래약정서 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증자리론용)</p> <p>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(거래방식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 내에 “√” 표시 합니다.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우대금리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(생략)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</td> </tr> <tr> <td>미집액</td> <td>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추가우대 (최대 1.0%p 내 적용가능)</td> <td rowspan="2">사회적 배려층 (최대 2개 선택가능)</td> <td>(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그 외</td> <td>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청년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혼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생아출산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건축물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 주택 입주자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1.0%p ※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</td> </tr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조기(중도)상환수수료</td> <td> 1. (생략) 2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배려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*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기준 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채권유동화에 관한 특약사항 -</p> <p>제8조 주택보유수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보유한 주택(지분으로 보유한 주택, 주택면적이 1/20이상인 복합용도 주택,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, 보증자리론 담보주택인 오피스텔 포함) 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다만, 본건 담보주택</p>	우대금리	(생략)			미집액	(생략)			추가우대 (최대 1.0%p 내 적용가능)	사회적 배려층 (최대 2개 선택가능)	(생략)		그 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청년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혼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생아출산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건축물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 주택 입주자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1.0%p ※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	조기(중도)상환수수료	1. (생략) 2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배려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*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기준	보증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사항 반영
우대금리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집액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우대 (최대 1.0%p 내 적용가능)	사회적 배려층 (최대 2개 선택가능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그 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청년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혼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생아출산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건축물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 주택 입주자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 1.0%p ※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기(중도)상환수수료	1. (생략) 2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배려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 *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우대금리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집액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우대 (최대 1.0%p 내 적용가능)	사회적 배려층 (최대 2개 선택가능)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그 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청년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혼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생아출산가구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건축물 0.1%p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 주택 입주자 0.2%p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1.0%p ※ 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기(중도)상환수수료	1. (생략) 2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배려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등 *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이하 ‘기존주택’)을 보유하고 있거나, 대출실행 후 검증기준일(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)을 기준으로 추가 주택을 보유(이하 ‘추가주택’)할 경우 기존주택은 3년 내,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* 내 처분(이하 ‘처분기한’)할 것을 약정합니다.</p> <p>* 추가주택을 분양권(조합원 입주권 포함)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<u>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같은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자등”이라 한다.)</u>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 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LTV-DTI 우대 적용 특약 -</p> <p>제13조 LTV-DTI 우대 적용 <생략> 이 경우, 실수요자 요건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용도)에 관한 내용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.</p>	<p>외에 기존 1주택(이하 ‘기존주택’)을 보유하고 있거나, 대출실행 후 검증기준일(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)을 기준으로 추가 주택을 보유(이하 ‘추가주택’)할 경우 기존 주택은 3년 내,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* 내 처분(이하 ‘처분기한’)할 것을 약정합니다.</p> <p>* 추가주택을 분양권(조합원 입주권 포함)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<u>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같은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자등”이라 한다.)</u>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 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LTV-DTI 우대 적용 특약 -</p> <p>제13조 LTV-DTI 우대 적용 <현행과 같음> 이 경우, 실수요자 요건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용도)에 관한 내용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	비고										
<p align="center">-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관한 특약사항 -</p> <p><u><조항 신설></u></p> <p>1.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연금 개별 인출 등으로 보금자리론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주택 연금으로 전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주택연금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시점의 연금가입요건에 따라 전환여부가 결정되며, 연금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중략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15 667 710 698"> <tr> <td>본인</td> <td>_____ (인)</td> <td>자필확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 align="center"><u><신설></u></p>	본인	_____ (인)	자필확인		<p align="center">-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관한 특약사항 -</p> <p><u>제15조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</u></p> <p><현행과 같음></p> <p><현행과 같음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42 667 1236 698"> <tr> <td>위 특약사항 제15조에 동의함</td> <td>본인</td> <td>_____ (인)</td> </tr> </table> <p align="center">- 담보주택 전입에 관한 특약사항 -</p> <p><u>제16조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목적 오피스텔 담보주택 전입</u></p> <p>① 채무자가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주거용임을 확인(전입 세대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을 통한 전입한 기록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 등기, 민법,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중 1가지 방법) 할 수 없는 경우와 담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하며,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, 전입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42 1182 1236 1214"> <tr> <td>위 특약사항 제16조에 동의함</td> <td>본인</td> <td>_____ (인)</td> </tr> </table>	위 특약사항 제15조에 동의함	본인	_____ (인)	위 특약사항 제16조에 동의함	본인	_____ (인)	
본인	_____ (인)	자필확인										
위 특약사항 제15조에 동의함	본인	_____ (인)										
위 특약사항 제16조에 동의함	본인	_____ (인)										